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길동	750101-*****	

■ 교육비 부담내역 (단위:원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
학교명	5월	6월	7월	8월	지출금액계
사업자번호	9월	10월	11월	12월	
일반교육비	0	5,000,000	0	0	
***대학원	0	0	4,500,000	0	9,500,000
5-83-02*	0	0	0	0	
일반교육비 힙	·계금액	9,500,00			
현장학습비 힙	계금액				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홍부인	810101-*****	

■ 교육비 부담내역 (단위:원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
학교명	5월	6월	7월	8월	지출금액계
사업자번호	9월	10월	11월	12월	
일반교육비	0	5,105,000	0	0	
***대학교	0	0	0	4,076,000	9,181,000
7-83-01*	0	0	0	0	
일반교육비	500,000	0	0	500,000	
***학점은행제	0	0	500,000	0	2,000,000
2-82-03*	0	0	500,000	0	
일반교육비 힙	h계금액	11,181,00			
현장학습비 힙	가계금액				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영수	000101-****	

■ 교육비 부담내역 (단위:원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
학교명	5월	6월	7월	8월	지출금액계
사업자번호	9월	10월	11월	12월	
일반교육비	230,000	230,000	230,000	230,000	
***사회복지시설	230,000	230,000	230,000	230,000	2,760,000
7-82-00*	230,000	230,000	230,000	230,000	
일반교육비	70,000	70,000	50,000	45,000	
***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 관	25,000	70,000	40,000	70,000	680,000
6-82-01*	30,000	70,000	70,000	70,000	
일반교육비 힙	계금액	3,440,6			
현장학습비 힙	계금액				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철수	050101-*****	

■ 교육비 부담내역 (단위:원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
학교명	5월	6월	7월	8월	지출금액계
사업자번호	9월	10월	11월	12월	
일반교육비	0	0	0	0	
***중학교	0	17,700	0	0	37,600
3-82-06*	0	19,900	0	0	
현장체험학습비	0	0	0	0	
***중학교	76,740	0	0	0	76,740
3-82-06*	0	0	0	0	
일반교육비 힙	·계금액	37,			37,600
현장학습비 힙	·계금액	7.			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둘리	170101-*****	

■ 교육비 부담내역 (단위:원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
학교명	5월	6월	7월	8월	지출금액계
사업자번호	9월	10월	11월	12월	
일반교육비	0	0	0	0	
***유치원	0	0	0	0	1,100,000
9-83-02*	0	0	1,100,000	0	
일반교육비	0	44,800	230,400	60,040	
***학원	250,800	307,880	230,400	0	1,840,720
4-83-00*	248,400	216,000	169,200	82,800	
일반교육비 힙	· 기계금액	2,940,7			
현장학습비 힙	 계금액				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수강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길동	750101-*****	

■ 직업훈련비 납입내역 (단위:원)

교육기관명(사업자번호)	1월	2월	3월	4월	
과정명	5월	6월	7월	8월	납입금액 계
과정코드	9월	10월	11월	12월	
FF 아카데미 (605-85-44***)	63,150	63,150	63,150	0	
디지털디자인향상과정(웹표준및웹접근 성)	0	0	0	0	189,450
AIG201600001202663	0	0	0	0	
FF 아카데미 (605-85-44***)	0	0	0	0	
실내건축설계 향상과정(Auto CAD)	0	60,250	0	0	60,250
AIG201600001201248	0	0	0	0	
Q 직업학교(617-19-53***)	46,000	46,000	46,000	46,000	
중국어 초급 2	46,000	46,000	46,000	46,000	552,000
ACG2016200062191918	46,000	46,000	46,000	46,000	
인별합계금액	계금액 801,700				

1. 세액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

-6-

- ※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
- 2. 공제대상금액한도 : 한도 없음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김철수	050101-*****		

■ 교복구입비 부담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1월	2월	3월	4월	
상호	5월	6월	7월	8월	지출금액 계
	9월	10월	11월	12월	
314-83-01***	0	0	242,000	0	
***학교	0	0	0	0	242,000
	0	0	0	0	
305-16-25***	0	0	0	0	
OK교복	0	0	0	0	52,000
	0	52,000	0	0	
605-01-59***	0	142,000	0	0	
학생교복	0	0	0	0	142,000
	0	0	0	0	
인별합계금액					436,000

1. 공제 대상 : 중·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용

2. 공제 한도 : 학생 1명당 연 50만원

(교복구입비와 수업료 등 교육비를 합하여 연 300만원 공제한도 적용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(월별)내역 [교육비: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길동	750101-*****

■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내역

(단위:원)

교육비구분	1월	2월	3월	4월	
자료제출기관	5월	6월	7월	8월	원리금상환액 (공제대상금액)
사업자번호	9월	10월	11월	12월	
학자금대출상환액	32,997	32,997	42,899	47,496	530,225
장학재단	45,963	47,496	45,963	47,496	
4-82-10*	47,496	45,963	47,496	45,963	
학자금대출상환액	6,824	6,839	108,484	125,405	
행복기금	123,076	124,620	122,317	123,834	-
0-87-71*	124,974	0	0	0	
학자금대출상환액	322,498	62,416	62,416	3,686,315	
학자금 공사	62,416	62,416	62,416	62,416	7,838,368
4-81-86*	3,305,500	49,853	49,853	49,853	
인별합계금액					9,234,966

- 1. 공제 대상: 학자금대출(등록금 대출에 한정)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(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)
 - ※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의 종류
 -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 -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

-8-

-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
- 2. 공제 한도: 한도 없음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